■「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」 [별지 제12호서식]

[ ] 지상파방송국 / [ ] 지상파방송보조국 / [ ] 위성방송국 허가증 [ ] 정 정 / [ ] 재발급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2일

신청인	법인명 (대표자명)	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
	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 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)	(　　-　　) (담당자 :　　전화:　　팩스: E-mail :　　)		

허가 사항	방송국의 명칭 (방송국 종류)	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	허가번호
정정 또는 재발급사유			

「전파법」제34조제4항 및 「전파법 시행령」제33조제2항·제3항에 따라

[ ] 지상파방송국 / [ ] 지상파방송보조국 / [ ] 위성방송국 허가증의 ([ ] 정정 「] 재발급)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청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중

제출서류	해당없음	수수료 「전파법시행령」 제100조에 따른 해당수수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처 리 절 차	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	
신 청 인	처 리 기 관 (담 당 부 서)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(방송정책국, 방송미디어진흥국)
신 청 서 ▶	접 수
	▼
	검 토
	▼
	결 재
	▼
◀ 발 급	지상파방송(보조)국 허가증, 위성방송국 허가증